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24

제 출 일 : 2024. 8. 23.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9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본 사무를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재위탁) 함으로써 관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위탁사무 내용

-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항
- 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 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운행 및 관리
- 다.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 라. 차량 이용요금 징수
- 마. 차량에 대한 종합정보망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 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사. 기타 본 사업에 부속되는 사항 등

3. 위탁시설 개요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콜관제시스템

시 설 명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 재 지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50(덕성빌딩 2, 3층)	
시설규모	270m²(2층 76m², 3층 194m²)	
시설용도	사무실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인력	76명(센터장1 / 사무원7 / 상담원5 / 운전원63)	

○ 특별교통수단 및 차고지

구 분		대 수	휴게공간
다산동	청사6부지 차고지	34대	101m ²
진건읍	제2공영주차장	23대	76m ²
와부읍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3대	12m^2
합계		60대	189m²

4.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의 연속성과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추진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7,000백만원[2025년 본예산(안)]
- 국비 570백만원(정액) / 도비 1,929백만원(30%) / 시비 4,501백만원(70%)

(단위:백만원)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ᆺᆔ
인건비	운영비	운영비	소 계
4,490	1,713	797	7,000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남양주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장애인·노인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사무로 민간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
경제적 효율성	■ 비영리법인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공 운영 대비 예산 절감 가능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분기별 실적보고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사업 개선 및 발전 도모에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 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차량(바우처택시 등)의 도입・ 운영을 통한 기존 특별교통수단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
종 합 의 견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등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

8. 향후 추진계획

○ 2024. 9. : 시의회 심의 및 수탁기관 공개 모집

○ 2024.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2024. 12.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9. 참고 사항

○ 관계 법령 각 1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5. 16.>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16.>
 - ⑦ 시·도지사는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2. 1. 18., 2023. 5. 16.>
 -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 ①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2023. 5. 16.>
 - ①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전문개정 2012. 6. 1.]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233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영 제14조의6제1항제1호가목9)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한다.<개정 2024.4.4.>
-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9.19.>
- ③ 삭제<2024.4.4.>
-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9.19., 2024.4.4.>
-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2.9.19., 2024.4.>
- 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시를 관할하는 경기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신설 2019. 8. 8.><개정 2022.9.19.>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2024.4.4.>]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2. 15.]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2182호, 2024. 2. 15., 일부개정]

제19조(재위탁 · 재계약) <개정 2024.2.15.>

- 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15.>
- ② 시장은 재위탁 · 재계약 시 의회동의 이전에 제5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2.15.>
- ③ 시장은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수탁기관을 연속하여 선정하고자 할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24.2.15.>
- ④ 시장은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와 제17조의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2.15.>
- ⑤ 시장은 재위탁 ·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2.15.>